

[2026 박문각 행정사 1차 조민기 민법총칙 기본서] 정오표

※ 정오 사항은 [초판\(2025. 8. 5.\)](#) 발행 도서에 해당됩니다.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341p (2) 포기의 요건-④ 두 번째 문장 삭제	④ 포기가 유효하려면 포기하는 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한 경우이어야 한다. 판례는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 하거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④ 포기가 유효하려면 포기하는 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한 경우이어야 한다.
341p 하단 판례 1번 교체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u>목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목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1. 6. 12, 2001다3580).</u>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u>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전합 2025. 7. 24, 2023다240299).</u>